

# 전국체육대회 「산악」 대회규정 (일반등산)

2008년 8월 29일 개정

2009년 9월 26일 개정

2012년 9월 02일 개정

- 제 1장 개 요
- 제 2장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
- 제 3장 평가방법
- 제 4장 대회코스 규정
- 제 5장 운행능력 규정
- 제 6장 산악독도 규정
- 제 7장 장비점검 규정
- 제 8장 배낭무게 규정
- 제 9장 응급처치 규정
- 제10장 암벽경기 규정
- 제11장 매듭법 규정
- 제12장 산악안전 규정
- 제13장 종합점수 산정
- 제14장 대회 상·벌 절차
- 제15장 경기 이의신청

## 제 1 장 개요

- 1-1. 대 회 : 같은 주최자와 같은 이름에 의해 동일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를 뜻한다.
- 1-2. 경 기 : 단일 경기방식을 말한다.
- 1-3. 시 합 : 각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전의 경우 하나의 단체 모두의 시합을 하나의 시합으로 칭한다.
- 1-4. 고 문 : 대한산악연맹 역대 회장을 역임한 분
- 1-5. 명예대회장 : 문화체육관광부 장관
- 1-6. 대 회 장 : 대한산악연맹 회장
- 1-7. 부대회장 : 대한산악연맹 부회장
- 1-8. 참 여 : 시·도 연맹 회장
- 1-9. 본부임원 : 대한산악연맹 이사 및 감사
- 1-10. 대회본부장 : 주관 시·도 연맹 회장
- 1-11. 대회운영위원 : 주관 시·도 연맹 임원
- 1-12. 심판위원장 : 대한산악연맹임원(일반등산 위원장)
- 1-13. 심판위원 : 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공인심판중 당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임명 한 자
- 1-14. 루트세터 : 루트설정 책임자와 설치자로 나누며, 루트설정 책임자는 루트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(암벽등반, 산악독도, 응급처치, 운행능력)
- 1-15. 기록및촬영 : 대회의 모든 기록을 전산처리하는 자 및 보관 하고자 하는 자료 촬영자
- 1-16. 대회방법 : 3인 1조 단체 경기
- 1-17. 출전부문 : 고등부(남, 여), 대학부(남, 여), 일반부(남, 여)
- 1-18. 선수자격 : 가. 시·도 연맹 회장이 추천한 단체나 팀으로 구성한다.(개별팀 출전불가)  
나. 전 부서 출전팀 구성은 단일(산악회) 팀으로 구성한다.(연합팀 구성불가)  
단, 학생부(고, 대)는 예외로 연맹단위(연합 팀)로 구성이 가능하다.
- 1-19. 선수복장 : 가. 선수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어 출전해야 한다.  
-복장문제에 의한 사고발생 시 선수자신이 책임을 진다.  
나. 선수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대회 번호표를 반드시 대회기간동안 앞가슴 부위에 식별이 가능하게 항상 부착하여야 하며, 번호표는 수정하지 못한다.  
두 개가 제공되면 하나는 등에 부착하여 앞, 뒤에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(단, 배낭을 지는 경우 배낭의 뒤쪽에 부착하여 뒤에서도 식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)
- 1-20. 대회장소 : 주관 시·도 연맹에서 대회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대산련 일반등산위원장에게 신청한다. 일반등산위원장은 관련위원들과 대회장소를 사전에 답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승인하여 선정된다.

## 제 2 장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

구분	운행 능력	산악 독도	장비 점검	배낭 무게	응급 처치	암벽 경기	매듭법	산악 안전	종합 점수
학생/일반	15	10	10	10	10	14	6	10	85

## 제 3 장 평가방법

- 3-1. 부문별 팀은 3명으로 구성하여 단체행동으로 동시출발, 동시 도착해야 한다.
- 3-2. 출발순서는 대회 접수 시 추첨한 번호가 각 팀의 출발 순서가 된다.
- 3-3. 정해진 구간을 제한시간 이내 통과하고 각 지점(포인트)에서 팀 별로 심사를 받는다.
- 3-4.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규정대로 부착하여야 한다.
- 3-5. 각 팀은 지정 구간(포인트)도착 시 심판에게 확인(카드인식)하고 평가시험 후 다음 구간으로 출발한다.
- 3-6. 등산대회 동일부문 동일점수에서는 운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팀이 상위 팀으로 한다.
- 3-7.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시험 시간은 운행시간에 포함한다.
- 3-8. 심사 방법은 본부가 규정한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
- 3-9. 본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3-10. 대회 종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대회 본부에서 성적 순위를 발표한다.

## 제 4 장 대회코스 규정

- 4-1. 대회코스 설정은 도상거리 10km에서 ± 2km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.
- 4-2. 오름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~10%이내 설정, 내림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~10%이내 설정한다.
- 4-3.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대회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5 장 운행능력 규정

- 5-1. 등산대회 출발 시 대회본부에서 축척 1:15,000 운행지도를 지급한다.
- 5-2. 지도에는 운행구간별 규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다(규정시간 내 통과 시 구간 15점 만점이다)
- 5-3. 구간운행 시간배점 :  
(구간별 지정 소요시간<지도에 표기>÷각 팀의 소요시간)×15점 = 구간별 점수합계
- 5-4. 구간운행 중 중간 통과 확인체크구간 미 통과 시 각 미 체크 당 운행점수 -5점씩 감점한다.
- 5-5. 출발시간은 3명중 선두선수 출발(카드체크)시간으로 입력한다.
- 5-6. 운행구간 시간입력은 3명중 마지막 선수가 구간도착(카드체크)시간으로 입력한다.
- 5-7. 운행구간 중 길 찾기가 난이한 구간은 표식기(가로20cm X 세로20cm 빨강색)  
진행방향 오른쪽3m방향 50~120cm 높이에 설치하고 지도에 ■(적색)로 표기한다.
- 5-8. 운행순서는 출발부터 포인트 순으로 하며 역 운행하여 포인트 체크 시는 실격 처리한다.
- 5-9. 운행구간 소요시간 적용방법은 아래의 표를 기준하며 포인트 평가시험 시간을 더한다.  
(단, 암벽평가는 제외)

$$\text{등산시간} = \frac{(\text{도상거리} \times \text{축척}) \times \text{거리계수}}{5\text{km} \times \text{속도계수}} \times 60\text{분}$$

기준		거리계수 (실제거리환산계수)	오름속도계수 (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)	내림 속도계수 (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)
구 간 경 사 도	경사10%이내	1.1	0.85	0.8
	경사10~15%이내	1.2	0.8	
	경사15~20%이내	1.3	0.75	
	경사20~25%이내	1.4	0.7	0.7
	경사25~30%이내	1.5	0.65	
	경사30~40%이내	1.6	0.6	

※ 배낭무게 10kg기준,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5km/hr인 사람 기준

## 제 6 장 산악독도 규정

- 6-1. 산악독도 평가는 등산대회 운행구간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,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.
- 6-2. 산악독도 경기는 운행 중에 대회코스에서 실기 또는 이론으로 실시한다.
- 6-3.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를 대회 조건에 맞게 책임위원이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6-4. 산악독도의 방위각 실기문제는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상 측정각도는 ±2도 이내는 정답, 실제 대회현장 측정은 ±4도 이내는 정답으로 인정하고, 그 이상은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차등 적용한다. (대회 장소에 따라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, 출제문항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)
- 6-5. 운행 중 포스트에서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.
- 6-6. 포스트에서 팀당 3매(1인1~5문항×3명) A, B, C형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한다. (아래 내용 이외의 독도법 관련문제를 포괄적 내용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)

- 아 래 -

### 가. 자복선 긋기

- 1) 자복선 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.
- 2) 편각도표에서 제시하는 도자각의 ‘분’ 이하는 생략한다.
- 3) 선의 길이는 5Cm 이상, 선의 수는 1개 이상, 3Cm~4Cm 정도 간격 , 머리에 자복선 표식기호.
- 4) 정답 각도에서 1도 단위로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- 5) 이론시험에서 별지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.

### 나. 도상 방위각 측정

- 1) 지도상에 제시된 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한다.
- 2) 이론시험에서 별지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.
- 3) 도상방위각 측정은 ±2도 이내는 정답,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
### 다. 현장 방위각 측정

- 1) 포스트에서 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을 점검한다.
- 2) 측정된 방위각은 ±4도 이내는 정답,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
라. 자기위치 판정

- 1) 전, 후방 교차 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한다.
- 2)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.
- 3)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정답지점의 3mm이내는 정답, 3mm초과는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
마. 진행방위각 측정

- 1)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다.
- 2) 진행방위각은 ±4도 이내는 정답,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
바. 측척의 이해와 거리측정

측척에 의한 도상거리 ±2mm 와 실제거리 ±50m 범위 이내는 정답,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.

사. 등고선의 이해: 경사도, 높이에 대한 이해, 곡단면도에 대한 적용 및 작도능력을 점검한다.

아. 지형도 읽기: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읽기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점검한다.

6-7. 답안지 및 점수관리

- 가. 출제문제와 해당점수의 적용 등은 심판위원장이 위임한 책임위원(책임심판)에게 있다.
- 나.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.
- 다.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중에서 최대로 틀린 것을 최종점수로 적용한다.
- 라.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. 단, 최초 주어진 시간의 적용은 변하지 아니한다.
- 마. 답안지가 훼손되었거나 수검자 성명 등 기록사항의 누락,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글씨의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.
- 바. 독도에 응시한 팀에게는 해당대회에 부여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.

## 제 7 장 장비점검 규정

- 7-1. 등산대회 운행 중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.
- 7-2.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,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.
- 7-3. 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 시 -3점씩 감점한다.

## 제 8 장 배낭무게 규정

- 8-1. 배낭 무게는 팀당 30kg이상이어야 한다(만점 30kg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)  
(예: 29kg -1점, 28kg -2점, 27kg -3점, ... )
- 8-2. 운행 출발하여 도착까지 수시 평가한다(단, 배낭 속에는 등산장비만 인정한다)

## 제 9 장 응급처치 규정

- 9-1. 정 의 :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.
- 9-2. 평가심판 : 대회전에 심판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,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.
- 9-3. 평가장소 :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책임심판이 결정한다.

9-4. 평가방법 :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.

\*. 응급처치 출제 범위 내에서 책임심판이 선정한 실기문제 또는 필기 문제를 참가선수 3명에게 실시한다.

9-5. 평가범위 :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실시한다.

## 제 10 장 압벽경기 규정

### 제1조 등반 벽

10-1. 대회경기 등반 벽은 높이 7m이상, 폭 7m이상으로 한다.

10-2. 등반 벽 전체표면을 등반에 허용하며 사전에 사용이 금지된 벽면 (예: 벽 측면 가장 상단의 가장자리 경계선으로 구분한 표시선, 루트설정 책임자가 금지하는 부분 등)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.

### 제2조 경기방식

10-3. 대회경기는 3명이 한개 팀으로 등강기(어센더)이용 등반 후 하강하는 방식으로 하며, 오픈방식으로 한다.

10-4. 각 팀 3명의 선수가 순차적으로 등반 한다.(단, 순서는 각 팀이 알아서 정한다.)

10-5. 등반시작은 선수가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면, 체크(카드인식)하고 출발한다.

10-6. 등반루트를 등강기로 완등하고 하강을 완료 하여야 등반이 종료된다.

10-7. 각 팀은 배낭30kg를 메고 경기에 임한다.

### 제3조 안전관련 기준

10-8. 등반에 사용하는 장비는 UIAA, CE, KS 규격제품 과 심판위원장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10-9. 선수는 안전벨트, 헬멧, 기타 장비 및 복장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장비의 결함에 의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.

10-10.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매듭 또는 허용되지 않은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등반복, 대회 번호표의 수정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은 선수의 실격 사유가 된다.

10-11. 장비는 각 팀별 준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10-12. 선수는 등강기 중 1개 이상은 어센더류의 등강기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(참고 : 등강기의 종류는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)

10-13. 선수는 등강기를 개인이 준비함을 원칙으로 하나, 선수가 원하는 경우 주최 측에서 대여할 수 있다.

10-14. 등강기 사용 시 로프이탈 방지를 위하여 각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를 설치해야 한다. 단,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 홀이 있는 등강기에 한 한다.

10-15. 등강기로 등반 시 자기 확보 줄을 각 등강기에 각각 설치해야 된다.

10-16. 등강기로 등반 후 벽 상부에 도착 후에는 자기 확보를 먼저하고 등강기를 해체하고 등반 완료 신호를 한다. 이때 심판이 완료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.

10-17. 등반 완료 후 하강지점으로 이동하여 하강준비를 하며, 이때에도 자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. 선수는 하강준비를 마친 후 심판에게 하강신호를 한다.

이때 심판이 하강 신호를 하여야만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다.

#### 제4조 경기구역

- 10-18.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심판위원장이 공지한 시간까지 경기구역에 입장하여야 한다.
- 10-19. 경기구역 안에서는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,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이러한 행위는 그 즉시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실격된다.

#### 제5조 등반 전 준비

- 10-20. 선수가 등반을 위해 최종 준비하는 이동구역은 따로 준비하거나 경기구역 자체가 될 수 있다.
- 10-21. 경기장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안내 요원 외에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. 불필요한 지연은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.
- 10-22. 각 선수는 등반에 필요한 준비(등반장비 및 배낭등)를 마무리하고 대기한다.

#### 제6조 벽 보수

- 10-23. 루트 설정책임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유지, 보수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숙련된 유지팀을 확보한다. 안전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,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장으로 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0-24.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설정 책임자는 홀드 및 등반벽의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. 보수가 끝난 후에 심판위원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조언한다. 심판위원장의 진행, 정지 또는 재시작 결정은 항상 최종적이며,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
#### 제7조 기술적 사고

- 10-25. 기술적 사고란 등반벽의 변형, 파손, 그리고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말한다.
- 10-26. 기술적 사고가 심판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등반에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. 선택 후에는 그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- 10-27.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등반에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심판은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것인지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하거나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  
이 경우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음 기회를 허락한다.
- 10-28. 기술적 사고가 선수에 의하여 지적된 경우 선수가 등반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. 만약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술적 사고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- 10-29.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이 된다. 선수가 추락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다면, 그 선수는 즉시 특별한 격리구역으로 인도되어 기술적 사고로 주장한 결과를 기다린다. 루트 설정책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청구된 기술적 사고를 확인하고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심판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이 되고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
- 10-30.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분리된 격리구역에서 휴식시간이 부여되며, 대회 조직위 위원 이외는 어떠한 사람도 접촉할 수 없다. 선수는 사고가 복구되기 까지(약 20분간의) 휴식을 제공한 후 재시도하며 그 중에서 좋은 등반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부여한다.

### 제8조 출발순서

10-31. 부문별 주최 측에서 뽑기로 결정된 대회번호 순서대로 출발한다.  
단, 운행 중 평가 시는 부문별 도착순으로 평가한다.

### 제9조 평가 방법

10-32. 등반경기 평가점수는 14점으로 등반 참가 기본점수는 5점이 주어지며 등반만점시간(당일공지) 이내 등강기로 완등한 후 하강이 완료되면 선수1명당 3점(3명X3명=9점)을 획득한다.  
10-33. 등반 경기 중 등반포기, 추락, 2분 이상 진전이 없을시 주최 측 안전 팀의 도움으로 내려온다. 이때 등반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.  
10-34. 등반평가 만점시간은 현장 사정에 맞추어 심판위원장이 당일 공지한다.

### 제10조 등반 장비

10-35. 아래의 필수 장비를 소지하여야 되며, 미소지 시에는 심판이 등반을 불가 할 수 있다.  
(개인장비)

순번	장 비 명/규격	수량	비고
1	안전벨트	1	
2	헬멧	1	
3	하강기	1	2줄 하강이 가능한 것
4	등강기	1개이상	어센더류 1개이상
5	확보줄/규격품	2개이상	등강기 및 자기확보용
6	잠금카라비너	3개이상	자기확보 및 하강기용
7	카라비너	3개이상	

10-36. 등반장비 중 주마스텝, 줄사다리(Ladder), 자동 확보줄등의 장비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된다.

### 제 11 장 매듭법 규정

11-1. 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 법을 평가한다.  
11-2. 팀당 3개 문제 (1인 1문제×3명)로 평가한다.  
11-3. 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.  
11-4. 평가시험 범위는 등산교재 내에서 출제한다.  
11-5. 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,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.

### 제 12 장 산악안전 규정

12-1.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.  
12-2. 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(품질, 모양, 성능) 노후화 상태, 안전수칙 등 이다.  
12-3. 산악안전 평가 세부항목은 대회 1개월 전에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

## 제 13 장 종합점수 산정

- 13-1. 종합 최우수는 시, 도 연맹별 점수에 의해 선정한다.
- 13-2. 점수의 배점 표는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- 13-3. 점수 배점은 각 부문별 시, 도 연맹별 3위 이내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4위 이하 팀은 그 시, 도 연맹에 점수를 배점하지 않고, 4위 팀 이하의 점수는 다른 시, 도 연맹에도 부여하지 않는다.
- 13-4. 참가점수는 팀 수에 구애받지 않고 각부별 참가 시, 도 연맹에 10점을 부여한다.
- 13-5. 대회 10위 팀 까지만 종합 최우수 선정을 위한 점수를 배점토록 한다.

\* 종합 최우수 선정 점수 배점 표

구 분	남고부	여고부	남대부	여대부	남일반부	여일반부
1 위	100	100	100	100	100	100
2 위	80	80	80	80	80	80
3 위	60	60	60	60	60	60
4 위	40	40	40	40	40	40
5 위	35	35	35	35	35	35
6 위	30	30	30	30	30	30
7 위	25	25	25	25	25	25
8 위	20	20	20	20	20	20
9 위	15	15	15	15	15	15
10 위	10	10	10	10	10	10

## 제 14 장 대회 중 상·벌 절차

- 14-1.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(경기등록소, 격리지역, 이동지역, 경기장)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- 14-2. 심판은 기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 시 대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  - 가. 구두경고 : 다소 미미한 위반 시 1차로 주의를 주고 기록함
  - 나. 황색 카드 경고 : 3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
  - 다. 적색 카드 경고 : 5항에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함
- 14-3.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위반 시 적용한다.
  - 가.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(출발, 중지, 복귀, 지연행위 등)
  - 나. 심판에 대한 모독 행위(불쾌한 언어의 구사나 지나친 어필 등)
  - 다. 산악인이며, 스포츠 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
  - 라. 공식 식진, 식후 행사에 불참
  - 마. 지급된 번호표의 미착용

- 14-4. 황색 카드에 의한 경고를 받은 팀은 타 팀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다.  
한 경기에서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실격처리 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.
- 14-5. 다음의 규정위반은 적색 카드로 실격 처리하며 즉시 경기장 이외 지역으로 내보낸다.
- 가.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행위
  - 나. 자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출전
  - 다.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장비(복장 포함)를 착용한 경우
  - 라.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수단의 사용
  - 마.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
  - 바.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
  - 사. 심판 또는 조직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위협 행위나 모독행위
  - 아. 산악독도 대회지역에 대회전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
  - 자. 산악인(스포츠 인) 답지 않은 행위로 대회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진행을 방해한 행위
  - 차. 다른 선수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(지시, 소란, 욕설, 모욕 등)
- 14-6.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를 받은 팀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위원장은 관련심판과 상의하여 해당 팀 임원진 또는 팀 에게 문서로 전달하고, 대회 공식기록으로 남긴다.  
추가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기록과 함께 세부적 보고서, 증거를 첨가하여 위원장의 의견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한다.
- 14-7. 팀의 관련임원(감독, 코치진)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한다.
- 14-8.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.
- 14-9. 상벌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가. 심판위원장, 일반등산위원회 운영임원(장, 부, 총무)과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한다.
  - 나. 의결은 참가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.

## 제 15 장 경기 이의신청

### 제1조 개요

- 15-1. 기록실은 각 분야별 점수집계가 종료되면 즉시 점수와 답안을 수합하여 예정고시를 한다.  
예정고시를 한 성적이나 문제의 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에 고시되는 예정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20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
- 15-2. 기록실의 예정고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알림이며 최종이 아니다. 예정고시 후 20분이 경과하여 위원장이 확정고시를 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.
- 15-3. 이의신청은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, 팀의 운영임원(감독, 코치)이 직접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- 15-4.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정고시 시간은 확정 발표 시까지 정지된다.

### 제2조 대회 이의심사

- 15-5. 지정서식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된 심판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.
- 15-6. 문제점이 수정된 경우 전체 선수단에게 알리고 예정고시를 수정하여 다시 공지한다.  
이 때 부터 공지시간은 다시 20분으로 한다.

- 15-7.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팀에게만 알리고, 정지된 시간부터 남은 시간만을 게시하고 확정 고시 한다.
- 15-8. 이의신청 시 비디오 기록을 활용하는 판독은 공식으로 인정한 비디오 기록만이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판독은 심판위원장과 해당심판으로 제한한다.

### **제3조 중앙 징계위원회에 상고**

- 15-9. 심판위원장은 규정위반사항이 K.A.F의 징계위원회가 심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팀의 책임자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에 제출한다.

### **제4조 중앙 징계위원회**

- 15-10.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K.A.F의 “정관”에 따른다.

### **제5조 이의신청 수수료**

- 15-11. 이의신청 수수료는 일반등산위원회가 매년 대회 전 발표하는 금액에 따른다.
- 15-12. 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반환하되 기각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15-13. 기각된 수수료의 소유권은 일반등산위원회가 가진다.



# 제 회 전국체육대회 [산악] 일반등산

장소 :  
 주최 :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

일시 :  
 주최 : 산악연맹

## 이 의 신 청 서

신청금 : 100,000원

신청자 성명		출전부분		소속단체	
소 속 시 도		코 치		감 독	
신 청 일 시	년 월 일 시 분				
이 의 내 용					

## 이 의 결 과 통 보

접수자 성명		소속시도	
이의판정 심판	심판위원장 :	심	판 :
이의신청 결과			

심판 위원장 :  
서 명 :



